

5 - 34	전기 기자재 설치의 재하도급		
질의 일자	2017-09	회신 방법	국민신문고 민원
질의 내용			
○ 설치 업무만을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재하도급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			
회신 내용			
○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은 금지되나,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전기 기자재를 제작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. ○ 이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수한 전기 기자재의 경우 직접 제작한 공사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○ 따라서 재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기자재를 제작 납품하면서 그 전기 기자재를 직접 설치하는 재하도급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,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이 제작한 전기기자재를 재하수급인이 설치만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.			